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가합61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트 [담당변호사 도형욱]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경, 유지원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균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9. 5.

주 문

-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양도 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으로,

1.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2021. 4. 2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를 이행하라.

○ 예비적으로,

1. 피고 B와 피고 C주식회사 사이에 2021. 4. 2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4. 21. 체결된 채권양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3.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

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의 체결

1)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판촉물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20. 4. 24.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상장회사인 H 주식회사의 주식 2,724,795주(당시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25.7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21. 2. 내지 3.경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이라고 한다) 그 대가로 6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의 대표이사 I은 2021. 4. 18. 기지급한 60억 원이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가임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금 35억 원 (2021. 2. 28. 3. 2. C 대표 I J은행 입금)

금 25억 원 (2021. 3. 25. C 대표 I J은행 입금)

상기 대금 입금은 H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C 주식회사가 보유한 자산양수도 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매도인” 보유의 H 주식회사 주식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C 주식회사 채권 및 자산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합의약정하고 위 주식 지급일까지 “매도인”의 자산 양·수도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배상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체결

1) 한편, 피고 C의 대표이사 I은 주식회사 K에 대하여 21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L이 2020. 11.경 I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합599247호로 위 대여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I은 2020. 12. 4. 주식회사 L, 피고 B과 「피고 C이 피고 B 측에 ‘㉠ 피고 C의 주식회사 E, D 주식회사 및 F에 대한 21억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채권, ㉡ 피고 C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회사 E 주식 102,000주의 주식이전 청구권(이하 ㉠, ㉡의 각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채권’이라고만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 B 측은 대여금 청구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합의서(이하 ‘소 취하 및 채권양도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9247(대여금) 신청사건에서 “갑(주식회사 K, 피고 B)”과 “을(㉠)”은 서로 합의하고 민·형사상에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

1. 주식회사 K, B은 I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M 계좌에 송금하여 I에게 채권 21억 원을 가지고 있다.
2. 주식회사 C 대표 I은 주식회사 N가 주식회사 G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유상증자 납입대금 21억 원을 주식회사 N 대표 F에게 차용하여 주고 주식회사 N에 대여금 채권 21억 원 및 N의 주식 51%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주식회사 C 대표 I은 N에 가지고 있는 채권 21억 원 및 N 51% 주식 및 기타 권리를 주

식회사 K B에게 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을 합의한다.

2) 그 후 피고 C는 2020. 12. 14. 이사회를 열어 '피고 C의 주식회사 E에 대한 21억 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의 건'을 승인하였고 2021. 4. 21.에는 피고 C의 명의로 이 사건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 갑은 피고 C, 을은 피고 B이다. 이하 위 합의서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 (양도대상 채권)

- 1) 갑 등이 2020. 4. 7. 주식회사 E에게 대여한 21억 원의 채권
- 2) 주식회사 E 발행 주식 51%에 관한 모든 권리
- 3) 그 밖에 갑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 일체.

제3조 (채권양도의 승인 및 통보)

- 1) 갑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주식회사 E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한다.
- 2) 주식회사 E의 승낙은 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갑의 의무)

- 1) 갑은 위 양도대상 채권이 타에 기 양도되었거나 가압류, 압류 등 권리의 하자가 없음을 담보한다.
- 2) 갑은 제3채무자가 갑에게 상계적상에 있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 3) 만일 제1, 2항의 보증내용에 위반하는 사유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갑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4) 갑은 위 양도채권을 을이 추심하여 실제로 전액 변제받을 때까지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다. 피고 C의 의무 불이행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한 O 주식회사가 2022. 1. 19. 위 근질권을 실행함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주식 전량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 11, 12,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무효 확인 청구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부분)

피고 C이 이 사건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한 것은 다음의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이하 '제1청구'라고 한다).

- ① 피고 C의 대표이사였던 I은 오로지 자신 또는 피고 B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이자 대표권 남용행위이며 피고 B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②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이 사건 채권을 비롯한 일체의 다른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 피고 C은 그 과정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예비적 청구취지 제1, 2항 부분)

설령 이 사건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들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에게 채권양도 취소 통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부분 청구를 '제2청구'라고 한다).

- ① 원고는 2021. 2. 28.경부터 2021. 3. 25.경 사이에 피고 C에 60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21. 4. 18.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주식 또는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2021. 4. 18. 피고 C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60억 원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② 그럼에도 피고 C은 2021. 4. 21.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었던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B은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침해한다는 사해의사를 가졌을 것이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 청구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 및 예비적 청구취지 제3항 부분) 피고 C은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에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다”고 합의하였고 피고 C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지급이 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D 주식회사 등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이하 ‘제3청구’라고 한다).

3. 제1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제1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본안전 항변을 한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을 구하거나 60억 원의 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이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 C에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구한다는 것인바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C을 상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 계약의 이행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확인 청구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제2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양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와 같은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기초사실에다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해행위 일시라고 주장하는 2021. 4. 21.경 원고 주장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에 “원고가 피고 C에 60억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 C이 보유한 자산양수도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기본적으로 피고 C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60억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2021. 4. 피고 C에 대하여 금전채권이 아닌 이 사건 주식이전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청구권은 특정채권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60억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원고 주장 피보전채권'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일정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60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성립근거가 되는 '일정한 조건'이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히 주장·증명하고 있지 않다.

③ 다만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서에는 「피고 C이 이 사건 주식을 지급할 때까지 자산 양·수도 및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배상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바,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C의 의무 위반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들로서 사해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되었던 것이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배상 채권은 피고 C의 이 사건 채권 처분행위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거나 그 발생의 개연성이 생기는 것일 뿐, 사해행위 당시 이미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한편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다23049 판결,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야 하는바,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증명책임은 취소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을 체결한 2021. 4. 18. 곧바로 60억

원의 반환을 구할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취득하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이 2021. 4.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피보전채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가액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는 '피고 C이 사해행위 당시(2021. 4. 21.)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또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4 내지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21. 4. 21.경 피고 C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 B에 대한 채권양도로 원고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오히려 갑 제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21. 2. 내지 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가로 60억 원을 받았던 사실, 피고 C이 2021. 4.경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며, 피고 C은 이 사건 채권 이외에도 어느정도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C이 이 사건 채권을 처분한 것을 유일한 자산의 처분이라거나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한편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대표이사 I이 2020. 12. 4.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속하는 소 취하 및 채권양도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 채권양도의 계약 성립에는 별다른 요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 ㉡ 소 취하 및 채권양도 합의서에 당사자로 피고 C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채권양도 부분에는 특별히 '피고 C의 대표이사'라는 I의 지위가 표시되어 있고 당사자들이 I 개인이 아니라 I이 대표하는 피고 C이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함을 알았음이 명백한 점, ㉢ 결국 피고들은 소 취하 및 채권양도 합의에 따른 법률효과를 피고 C에 직접 귀속시켜 채권을 양도받으려는 일치된 의사를 가진 채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¹⁾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원고 주장 피보전채권이 성립(2021. 4. 18.)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0. 12. 4. 이미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채권양도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그러므로 피고들이 2021. 4. 21.에 정식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21. 4. 21.에 비로소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채권양도 계약서 작성은 이미 양도한 채권에 확정일자 부여 등을 위해 확인적 의미로 한 것이거나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확약(소 취하 및 채권양도 합의)에 따라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있다.

5. 제3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서에 '피고 C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 C의 채권 및 자산으로 상계처리한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정산의 방법으로 기재된 '상계처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설령 위 '상계처리'를 이 사건 주식 대금인 60억 원에 상당하는 채권 및 자산을 귀속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가지는 채권 및 자산 규모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의 대상이 되는 C의 채권 및 자산이 특정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③ 특히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에 정해진 "이 사건 주식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라는 문언은 '1차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지급이 무산될 경우 2차적으로 다른 자산을 인도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주식 이전의 이행기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 C 자산에 대한 이전청구권의 성립시기도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의 이전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양도 계약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찬우, 판사 전준영, 판사 정문기

별지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